
『 개 봉 박 두 뉴 - 임 실 극 장 』
기 본 및 실 시 설 계 용 역 과 업 지 시 서

2023. 1.



임 실 군
[건 설 과]

목 차

| | |
|------------------------|----|
| 제1장. 총칙 | 2 |
| 1. 과업 명칭 | 2 |
| 2. 과업 목적 | 2 |
| 3. 과업 개요 | 2 |
| 4. 기본 지침 | 3 |
| 5. 과업 범위 | 3 |
| 6. 적용기준 및 시방서 | 3 |
| 제2장. 설계용역 일반사항 | 4 |
| 1. 법규준수의 책임 | 4 |
| 2. 업무수행 | 6 |
| 3. 납품 | 7 |
| 4. 설계의 책임 및 손해배상 | 7 |
| 5. 관계기술자 협력 | 8 |
| 6. 설계변경 및 정산 | 8 |
| 7. 설계용역 특기사항 | 8 |
| 8. 법령 등의 적용 및 시방서 작성기준 | 8 |
| 제3장. 설계진행사항 | 9 |
| 1. 설계도서의 작성 | 9 |
| 2. 설계진행시 제출서류 | 10 |
| 3. 업무보고 및 회의 | 10 |
| 4. 보안성 검토 | 10 |
| 제5장. 설계 지침 | 10 |

| | |
|------------------------------|-----------|
| 1. 설계의 기본방향 및 고려사항 | 10 |
| 2. 분야별 설계 지침 | 10 |
| 3. 설계도서의 분리작성 | 10 |
| 4. 설계도서의 표기 | 10 |
| 5. 도면 작성 | 10 |
| 제4장. 설계도서 작성요령 | 10 |
| 1. 계획설계(공모안 보완내용) | 10 |
| 2. 중간설계 | 10 |
| 3. 실시설계 | 10 |
| 제5장. 용역 성과품의 제출 | 10 |
| 1. 계획설계 성과품 납품 | 10 |
| 2. 중간설계 성과품 납품 | 10 |
| 3. 실시설계 성과품 납품 및 제반사항 | 10 |
| 1) 종결보고서 | 10 |
| 2) 설계설명서 | 10 |
| 3) 계산서 | 10 |
| 4) 납품 실시설계도면 작성에 관한 사항 | 10 |
| 5) 시방서 작성에 관한 사항 | 10 |
| 6) 예산 내역서 | 10 |
| 7) 예정공정표 작성 | 10 |
| 8) 관련법규 및 제반사항 준수 | 10 |
| 9) 기타사항 | 10 |

| | |
|---------------------------------|----|
| [붙임 1] 보안각서 | 10 |
| [붙임 2] 책임기술자 선임계 | 10 |
| [붙임 3] 하도급승인 요청서 | 10 |
| [붙임 4] (계획, 중간, 실시)설계 검사원 | 10 |
| [붙임 5] 주간공정보고 | 10 |
| [붙임 6] 월간공정보고 | 10 |
| [붙임 7] 특정자재 사용리스트 | 10 |
| [붙임 8] Space Program | 10 |
| [붙임 9] 사업부지 현황 | 10 |

제1장 과업의 개요

1. 과업명: 개봉박두 뉴-임실극장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2. 과업 목적

1971년 준공된 (구)임실제일극장은 1980년대까지 임실의 문화중심지로 임실 주민들의 추억을 회상시킬 수 있는 공간이다. 본 건물은 과거의 향수를 유발함과 동시에 현대식 복합문화공간으로 재창조하여 주민들의 여가 공간 제공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하고자함.

임실군 주민의 문화 여가공간이 부족하고, 지역 내 35사단이 위치하고 있어 지역민과 국군장병이 상생과 소통을 도모할 필요성이 있음으로, 임실버스터미널과 위치적으로도 적합한 뉴-임실극장을 건립하여 영화관과 다양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군인휴게공간(치즈카페), 여성 아동을 위한 문화공간으로서의 어린이 책마루(전문도서관)를 구성하여 임실군 구성원이 함께하는 임실의 문화 중심지로 도약할수 있도록 하고자 함.

3. 과업 개요

○ 대지위치: 전라북도 임실군 임실읍 이도리 732-1 외 5필지

○ 대지면적: 1,925.60m²

| 연번 | 소재지 | 신청면적 (m ²) | 신청외면적 (m ²) | 지목 | 비고 |
|----|---------------|---------------------------|----------------------------|----|----------------------------------|
| 합계 | 전라북도 임실군 | 1,925.60 | | | |
| 1 | 임실읍 이도리 732-1 | 1,319.50 | - | 대 | 공부상면적: 1,319.50m ² |
| 2 | 임실읍 이도리 732-4 | 122.50 | - | 대 | 공부상면적: 122.50m ² |
| 3 | 임실읍 이도리 732-5 | 90.10 | - | 대 | 공부상면적: 90.10m ² |
| 4 | 임실읍 이도리 734-7 | 179.00 | - | 대 | 공부상면적: 179.00m ² |
| 5 | 임실읍 이도리 734-8 | 192.00 | - | 대 | 공부상면적: 192.00m ² |
| 6 | 임실읍 이도리 182-4 | 22.50 | 2,207.90 | 대 | 공부상면적: 3,090.5m ² |

○ 지역지구: 일반상업지역(상대보호구역, 문화재보존영향검토대상구역)

○ 사업규모: 2,910m²(±3%)

- 건물 규모는 설계과정에서 임실군청(이하“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이하 “수급인”이라 한다)가 협의하여 조정될 수 있으며, 제반 법규 적합 여부는 별도 검토하여야 함.

- 용 도: 문화 및 집회시설, 운동시설, 1종근린생활시설, 2종근린생활시설
-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8개월**

-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공사발주가 지연될 경우 수급인은 내역서 수정 등 발주기관의 요구에 응해야 한다.

- 다음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여 과업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 ①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19조(계약기간의 연장)
- ②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24조(불가항력)
- ③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32조(기술용역의 일시정지)
- ④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32조의2 (계약상대자의 기술용역 정지 등)
- ⑤ 수요기관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과업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 ⑥ 수요기관의 사업비 조달계획에 따른 용역기간 조정 요청시

※ 건축협의, 각종 심의 등 행정절차에 소요되는 기간 포함

- 예정 공사비: **9,568,609**천원(부가가치세 포함)

- 제시된 예산액은 건축, 토목, 조경, 기계설비, 전기, 통신, 소방, 폐기물처리에 대한 총공사비이며, 또한 각종 (전기/가스/수도) 인입 비용을 조사하여 시설분담금으로 시설비에 포함하여야 한다.

(단, 추후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공사비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 공사비 조정 협의 시 관련 검토 자료를 작성한다.

- 설계 용역비: **493,85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 주요시설: [붙임 4] Space program 참조

구 분

- 1종 근린생활시설
 - 목욕장(남,여), 책마루, 치즈카페, 프로샷, 스낵바, 푸드코트 등
- 2종 근린생활시설 - 잡센터, 게임장 등
- 문화 및 집회시설 - 영화관 등
- 운동시설 - 볼링장 등

※ 제시된 공사비는 건축, 기계, 토목, 조경, 전기, 통신, 소방, 폐기물 처리 등 개봉박두 뉴-임실극장 신축공사 수행에 필요한 시설 공사비 등이 포함된 총공사비이며 전기, 가스, 상하수도 등 각종 인입에 따른 시설분담금도 공사비에 포함하여야 한다. (단, 추후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공사비 내용

이 변경될 수 있음)

- ※ 설계용역비에는 건축, 구조, 기계, 토목, 조경, 전기, 통신, 소방, 폐기물 처리 등의 기본 및 실시설계, 신재생에너지, 건축협회의 등의 각종 인허가 업무, 각종 인증(건축물에너지효율 등급,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 등), 각종 심의, 계약심사 등의 제반업무 등 발주처가 요구하는 신청 및 보고자료 등에 관한 일체의 비용을 포함한다.
- ※ 과업 범위의 변경 없이 공사비가 증가할 경우 추가 용역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용역계약 일반조건 등 참조)
- ※ 사업 규모(연면적, 공사비 등) 및 설계용역 기간은 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기본 지침

- 본 과업은 『개봉박두 뉴-임실극장』 건축설계 제안공모에서 선정된 계획을 기본으로 하여 계획설계 도서의 보완 및 작성, 중간 및 실시설계용역에 적용한다.
- 과업의 범위는 건축, 기계·설비, 전기, 통신, 소방, 조경, 토목 및 상하수도 등을 포함한 전 분야를 망라한 일체의 설계로 하며 건축법 및 관련규정에 의한 설계도서, 공사시방서, 조감도 및 내역서(품셈, 일위대가 및 단가조사 포함)의 작성 등을 포함하여 각종 인허가, 공사수행 및 심사에 필요한 자료 작성을 포함한다.(설계용역 성과물은 제반 인허가를 득한 성과물이어야 한다.)
- 건축물은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기본계획에 따라야 하며 에너지절약설계기준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취지 등에 적합하도록 계획·설계되어야 한다.
- 본 과업부지에 대한 현황과 주변 시설과의 관계, 대지의 형태에 따른 건축물의 배치 및 용도지역의 특성 등 대지의 여건과 관련 자료를 충분히 검토 분석하여 건립방향을 결정하고, 건물의 형태와 내·외부 마감재료, 마감방법, 설비계획 등의 대안을 설계(안)에 반영하고 미관, 기능, 친환경적 요소의 합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계하며, 감독관의 검토 등 발주처의 의견을 들어 설계(안)을 작성한다.

5. 과업 범위

- 본 과업은 계획설계, 중간설계, 실시설계로 구성되며, 관계기관과의 사전협의 및 각종 인·허가(건축협의 등)에 필요한 서류작성 및 제출, 연면적 증가 시

면적승인 및 시설비 증액협약에 필요한 모든 제반 업무를 포함 한다.

※ 설계용역 성과물은 제반 인허가 및 심의, 인증을 득한 성과물이어야 한다.

※ 건축, 기계, 전기, 소방, 조경, 토목 등 제반분야 일체의 비용을 포함한다.

※ 실시계획 인가 도서 작성 등 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사업추진 및 각종 위원회 자문·심의, 영향평가 등에 대한 업무 협조 지원.

○ 용역부지에 존치된 건축물에 대한 철거용역(설계)에 대한 업무를 포함한다.

○ 지반 및 지장물 조사에서 폐기물 발견 시 지정폐기물(석면 등) 조사 및 성분검사 결

과

를 반영한다.[대가는 추후 발주기관(임실군청)에서 별도 지급]

○ 기타 기술(설계) 용역을 수행하는 데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

는 일체의 사항에 대한 이행 및 보고서 작성, 합동토론회 발표자료 작성 및 조치사항 설계도서 반영

○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에너지 절약검토 수수료, BF인증 수수료 등 과업내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수급인의 협의 하에 수행한다.

[대가는 추후 발주기관(임실군청)에서 별도 지급]

○ 인·허가 업무

- 본 용역의 시행에 필요한 일체의 대 관청 인·허가는 수급인이 대행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용역착수 후 현장을 답사하고 해당 인허가 관청을 방문·협의하여 관련법규 및 규제사항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본 과업의 건축허가 및 건축허가를 취득하기 위한 선결조건 등을 파악하여야 하며, 그 추진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본 과업의 교통영향평가 등 각종 영향평가,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실시계획의 인가를 실시할 경우 수급인은 각종 용역업체와 협의하여 발주기관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향후 사용승인 신청 시 준공도서 작성, 인장날인 등 해당 발주기관의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본 용역이 완료된 후라도 대 관청 인·허가(협의사항)에 따른 서류보완이 필요하여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22조(설계의도 구현)에 정한 바에 따라

발

주자가 요청하는 시기에 전반적인 건축(현장)과정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6. 적용기준 및 시방서

용역 과업은 정부에서 제정한 아래의 각종 시방서 및 규정과 본 용역 설계서의 과업 지시서에 의거 시행하여야 하고, 과업 수행중 관련 규정 및 시방서가 개정된 경우와 특별히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우리 본부와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타당성조사 및 지반 안정성 보고서
-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 국토해양부등에서 제정한 각종 공사 표준시방서 및 설계기준(최근 발행)
 - ① 토목공사 일반 표준시방서
 - ②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 ③ 도로교 표준시방서
 - ④ 터널공사 표준시방서
 - ⑤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 ⑥ 구조물 기초설계 기준
 - ⑦ 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 요령(2008년 발행 적용)
 - ⑧ 하천공사 표준시방서
 - ⑨ 가설공사 표준시방서
 - ⑩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 ⑪ 하천설계기준·해설(2005. 건설교통부)
 - ⑫ 도로교 설계기준 (2005. 건설교통부)
 - ⑬ 콘크리트 설계기준 해설(2007년 한국콘크리트학회)
 - ⑭ 터널설계기준(2007. 건설교통부)
 - ⑮ 건설공사 비탈면 설계 기준(2011. 국토해양부)
- 일반국도 구조물 표준도
- 도로관련 각종 지침
 - ① 국도의 노선계획·설계지침(2006.12, 건설교통부)
 - ② 비탈면 녹화설계 및 시공 잠정 지침(2005. 7, 건설교통부)
 - ③ 도로배수시설 및 유지관리 지침(2003. 12, 건설교통부)
 - ④ 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지침(2004.12, 건설교통부)
 - ⑤ 건설폐자재 재활용 도로포장 지침(2005.01, 건설교통부)
 - ⑥ 터널내 포장설계지침(2005.09, 건설교통부)
 - ⑦ 보도설치 및 관리지침(2007. 5, 건설교통부)
 - ⑧ 암파쇄방호시설 설치 지침(2004. 11, 건설교통부)
 - ⑨ 건설폐기물처리기준 및 방법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2006.3. 환경부)
 - ⑩ 공동구 설치 및 관리 지침(2006. 7, 건설교통부)

- ⑪ 환경친화적인 도로건설 지침(2006. 12, 건설교통부)
- ⑫ 가열아스팔트 혼합물 배합설계지침(2005. 1, 건설교통부)
- ⑬ 도로표지관련 규정집(2006. 5, 건설교통부)
- ⑭ 도로공사 노천발파 설계·시공 지침(2006. 12. 건설교통부)
- ⑮ 수량산출기준지침(2007)
- ⑯ 전자설계도서작성·납품 지침(2007.6)
- ⑰ 국토 설계업무 매뉴얼(2007. 건설교통부)
- 건설공사 관련 법령 및 규정(건기법, 도로법, 도시계획법 등)
- 한국산업규격
- 건설공사 품질 및 규격관리실무 편람
- 도로용량 편람(2001년)
- 환경영향평가법
- 환경정책기본법
- 자연재해대책법(2008년) 및 시행령(2008년)
- 산업안전보건법
-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
- 기타 건설공사의 안전, 환경 등에 관한 법령 및 규정
- 공사시방서 작성 요령(97. 11 건설교통부 발행)
- 문화재 보호법
- 사전환경성검토업무편람(2004. 4. 환경부), 사전환경성검토 업무매뉴얼(2006. 10. 환경부)
- 해양오염방지법(공유수면 점용허가시)
- 전자도면 작성 편람 (2006.6)
- 신규공사 발주설계시 검토내용
- 산악지 도로설계 매뉴얼(2007.7 건설교통부)

제2장 설계용역 일반사항

1. 법규준수의 책임

- 본 설계용역의 최종보고서는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계획법, 소방법, 도로법, 지적법, 문화재보호법,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등 관련 법규와 각종 기술기준 및 표준시방서에 위배됨이 없고 관계 기관과의 협의가 완료된 것이어야 한다.
- 설계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법규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2. 업무수행

- 설계자는 본 과업과 관련된 각종 자문회의, 심의, 보고회를 개최할 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회의에 참석하여 설명하고, 각 분야별 기술사항에 대하여 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기술자로 하여금 질의에 답변하도록한다. 회의결과에 대하여는 설계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3. 납품

- 납품은 계획설계(설계공모안 보완제출), 중간설계, 실시설계 3회를 기본으로 한다. 다만, 설계용역 기간 등에 따라 납품회수와 납품도서 작성방법, 부수는 당해 용역 설계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설계의 책임 및 손해배상

- 설계도서는 설계자의 책임으로 작성하며 납품 후에도 설계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하는 설계변경을 포함한 일체의 책임 및 손해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에 따라 설계자가 부담(배상)한다.
- 수급인은 계약서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성과품을 납품 완료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8조(지체상금)에 의거 조치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다음 경우에는 과업을 정지하거나 과업기간을 변경 할 수 있다.
 - 수요기관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과업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와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9조(계약기간의 연장), 제24조(불가항력), 제32조(기술용역의 일시정지), 제32조의2(계약상대자의 기술용역정지 등)에 의하여 정지 및 변경사유가 될 경우.

5. 관계기술자 협력

- 건축법시행령 제91조의3(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과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3조(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사항)에 의한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관계법에서 정하는 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 설계자는 관계기관과 업무협의를 하기 전에 협의할 내용 및 자료 등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설계자는 협의 완료 후 협의 결과를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용역 준공 시 회의록 등 회의 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설계자는 발주기관이 관계기관 협의를 위한 자료제출 및 회의의 참석 등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공사 중 설계도서에 관련된 문의 및 질의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답변서 제출 등)하여야 한다.

6. 설계변경 및 정산

발주처는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시키거나 과업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설계 용역업자에게 이 사실을 요구할 수 있으며, 발주처와 협의를 거쳐 조정한다.

7. 설계용역 특기사항

- 개봉박두 뉴-임실극장 의 평면, 입면, 구조, 설비, 조경계획 등 세부시설계획은 건축설계 기본(안)을 기본으로 하되, 발주처에서 지정하는 자문위원의 의견을 종합하여 수정·보완한다.
- 용역자는 각종 인·허가를 용역완료 전에 이행하여야 하고 인·허가 시 조건 또는 부가사항은 보완하여 납품하여야 하며, 건축인·허가신청 전 관련부서 협의 등 건축허가 시 필요한 행정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필요시 발주처와 협의 결정한다.)
- 본 과업지시서에서 정하지 않거나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는 발주처와 협의 하여 결정하고, 기타 경미한 사항은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용역자가 부담한다.
- 감독관이 과업수행 중 하도급자나 고용인이 과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즉시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용역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 설계자는 작업현황에 대하여 과업추진내용을 작성 주간, 월간으로 공정보고하여야 한다.

- 주변건물 및 환경을 고려한 설계로 공사 중 또는 완료 후라도 민원 및 환경 피해가 없도록 한다.
- 본 용역의 시설규모 등은 행정절차 이행 및 내부 계획 변경 등으로 조정될 수 있으며 용역자는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신기술 및 특허사항, 실용신안 등 제품은 설계시 설계 및 시방서등에 일반 자재로 명기하여 특정업체 제품이 설계도서에 명기되어서는 안된다.
- 본 과업 지시내용에 의문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협의하여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처의 의견에 따른다.

8. 법령등의 적용 및 시방서 작성기준

1) 법령 등의 적용기준

- 설계자는 건축법, 환경정책기본법, 소방법 등 관련법규 상 건축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여 계약이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내용을 관련 기관과 문서로 협의하여야 한다.
- 본 설계용역의 성과품은 건축법, 건축사법, 국가기술자격법,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국토법,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상수도법,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도로법, 측량법, 하수도법, 주차장법, 지적법, 건설기술진흥법, 건설산업기본법, 소방법, 전기사업법, 전기공사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공사법, 소음진동규제법 및 상기 각 법의 시행령, 시행규칙과 기타 본 과업과 관련 있는 관련법, 령, 규칙, 고시, 예규, 규정, 훈령,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에 위배 또는 저촉되지 않도록 한다.
- 설계도서의 작성방법은 건설기술진흥법 제48조(설계도서의 작성 등), 동법 시행규칙 제40조(설계도서의 작성), 제41조(설계도서의 검토), 국토교통부고시(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KSF1501(건축제도통칙), KSF1505(건축구성재의 기본공차 및 치수 정하기), KSF1509(건축용 부품의 치수정하기)등 관련 규정에 의하고, 설계도서 작성중 이의가 있을 때에는 발주처와 협의 후 후속작업을 실시한다.

2) 시방서 작성기준

- 시방서의 작성은 일반적으로 적용하고, 공통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표준시방서와 특수공종이 발생하거나 특수한 현장조건에 따라 표준시방서의 추가, 수정, 삭제를 할 필요가 있을 때 특별시방서를 작성하며, 특별시방서는 특기 시방서, 관급시방서를 말한다.
- 표준시방서는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공사표준시방서, 토목공사표준시방서, 건축

전기설비공사표준시방서, 건축기계설비공사표준시방서를 기준으로 작성한다.

- 특별시방서는 자재관련시방(각종 기자재의 특성, 정격사용방법, 제작기준, KS 규격품등)과 도면에 표시가 힘든 각종 기기의 설치기준, 설치방법, 시험방법, 시공방법, 주의사항 등을 설명한다.

3) 보안유지

-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용역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또는 기밀사항을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5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 의무)에 의거 용역수행기간의 전후를 막론하고 일체 외부에 누설 금지
- 본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지득한 사항을 누설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주기관에 유무형의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건축사법 제20조(업무상의 성실의무 등) 제2항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
- 본 용역과 관련하여 제출한 모든 설계도서, 서류 및 자료에 대한 저작권, 소유권 등 일체의 권리는 발주자에게 귀속됨

제3장 설계진행사항

1. 설계도서의 작성

- 본 설계용역의 최종보고서는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계획법, 소방법, 도로법, 지적법, 문화재보호법,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등 관련 법규와 각종 기술기준 및 표준시방서에 위배됨이 없고 관계기관과의 협의가 완료된 것이어야 한다.
- 설계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법규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2. 설계진행시 제출서류

1) 착수시

설계자는 용역 착수시 다음의 제반서류(이하 “착수계”라 한다)를 각3부 제출하여야 한다.

- 착수계 1부.
- 책임기술자 선임계 1부.
- 설계용역 참여기술자(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포함) 현황 1부.
- 설계용역수행 조직표(연락처 기재) 1부.
- 과업수행계획서제출 1부.(각 관련주체들(건축, 소방, 전기, 통신 등)간의 업무범위와 책임), 실질적인 관련주체의 작업반구성이 되도록 작성)
- 각 공종(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소방 기타)의 분야별 책임기술자 명단, 구체적 업무내용, 소지한 기술자격증사본, 기술경력증명서, 이력서 등 각 1부.
- 설계용역 예정공정표(계획, 기본설계의 납품예정일자 명시) 1부.
-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 1부.
- 하도급 예정현황 1부. ※ 하도급 통보는 착수계 제출 시 할 수 있으나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착수 후 2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 인력, 장비투입 예정현황 1부.
- 보안각서 각 1부.
-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계획설계(안) 제출시 - 설계공모 내용을 기본으로 아래사항 보완

- 설계검사원
- 계획설계 작성방법에 따라 계획설계(안)에 대하여 설계지침에서 정한 사항
- 관련법규 검토서 1부.

- 현장조사 결과보고서 1부.
- 현황측량 및 경계측량 검토서
-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과 각종 인·허가 수행에 필요한 사항

3) 중간설계 제출시

- 설계검사원
- 중간설계 작성방법에 따라 설계지침에서 정한 사항
- 문화재심의, 건축협의 및 각종 심의 등에 반영할 수 있는 서류
- 지질조사보고서 (5공 이상 시추 - 시추 위치 감독관과 협의)
- 주요공법, 장비, 자재선정 보고서(대안제시 및 선정사유, 예산비교 등)
-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구체적 사항은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의 도서목록과 납품도서에 따름)

4) 실시설계 제출시

- 설계검사원
- 실시설계 작성방법에 따라 실시설계도서에 대하여 지침에서 정한 사항
- 종결보고서(착수 이후 설계과정의 전반적인 내용 정리) 필요 부수
- 각종 협의 완료(협의)서 등
- 공사예정공정표(공기산출 근거 포함)
-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구체적 사항은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의 도서목록과 납품도서에 따름)

3. 업무보고 및 회의

설계자는 설계진행시 정기적으로 설계진행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1) 업무보고

○ 주요보고회

- 착수보고회 : 2주 내외(설계공모내용 보완된 내용으로)
- 중간보고회 : 8주 내외(보고방식 및 일정은 감독관과 조율)
- 최종보고회 : 용역 준공 3주 내외(최종설계안)

○ 공정보고

- 주간공정보고 : 매주 월요일 (붙임의 양식에 의거 제출)
- 월간공정보고 : 매월 말일(붙임의 양식에 의거 제출)

☞ 매월 말일자를 기준으로 업무수행사항 및 예정사항을 작성제출

○ 수시보고

- 설계용역 진행 중 문제점 발생시에는 문제점을 분석하여 문제점 발생시마다 제출하여야 한다.

2) 업무회의

○ 일반사항

- 설계자는 설계진행과 관련하여 업무에 대하여 발주자와 협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협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단, 세부적인 공종별 설계내용에 대하여는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협의할 수 있다.
- 본 설계지침서에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설계자가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본 설계지침서에 대한 대안이 제시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객관성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채택할 수 있다.
- 발주자는 설계자에게 설계중 이행이 완성된 부분의 설계도서를 제출·요구하여 수정·보완 지시할 수 있으며 설계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다.
- 설계자는 자문회의 등 각종보고 또는 회의 시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여 준비하여야 하고, 이와 관련한 인쇄비등 제반 비용은 설계자가 부담한다.
- 설계자는 자문회의등 각종 회의시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회의장소와 참석범위 등을 협의하고 회의에 필요한 자료의 작성과 회의에 참석토록 하여야 한다.

○ 업무 착수회의

- 업무 착수회의는 착수일 또는 착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장소와 일자를 협의하여 개최한다.
- 업무 착수회의시 책임기술자는 착수계 내용을 기초로 설계 진행계획을 설명하여야 한다.

○ 수시회의

- 설계진행시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설계(안) 보고서 보고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배부하여야 하며 보고회의는 상호간 일시와 장소를 협의하여 개최한다.
- 특히 중간설계 및 실시설계 중 1차 공사비가 공사예산을 초과할 시에는 필히 전 공종 담당자 및 견적 담당자가 합동회의를 하여 감축방안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 보안성 검토

- 설계자는 본 과업 지시서에 의거 작성 또는 제출되는 각종보고서 및 지식을 개인 또는 특정단체 등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수 없다.
- 설계자는 보안상 다음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착수 시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착수계 제출시 설계참여 관련자 전원 보안각서 첨부)
 - 모든 성과품은 개인이 소유하거나 임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되며, 폐기물은 소각처리 한다
 - 과업수행자는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고 보안상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설계자가 진다.

제4장 설계 지침

1. 설계의 기본방향 및 고려사항

○ (구)임실제일극장의 과거 문화중심지로서 임실 군민들의 추억을 회상할수 있는 공간의 특성과 현대식 복합 문화공간으로 재창조하여 지역주민들의 여가공간이 될수 있는 특성을 반영한 설계

- 지역내 35사단이 위치하고 있어 지역민과 국군장병의 상생과 소통이 이루어 지도록 설계
- 임실 터미널 복합화 및 주변정비사업에 맞추어 연계가 이루어지도록 설계
- 지역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도 수행할 수 있도록 내·외부 공간에 여가·문화시설 및 시민들의 이용을 고려한 설계

○ 대지의 입지조건에 적합한 합리적인 설계

- 기존 시설과 주변 자연환경에 조화를 이루는 건축물이 되도록 설계
- 이용자가 안전한 동선을 확보할 수 있는 동선계획
- 인근 시설(터미널, 시장, 스케이트파크 예정)등을 고려하여 주변 환경과 어우러지며 하천 및 주변시설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배치, 구조 및 토목 설계

○ 미래지향적 시설 설계

- 시설의 운영과 사용에 따른 분석을 통해 최적의 프로그램 구성과 배치가 되도록 계획
- 노인 및 장애인 등 누구라도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유니버설디자인으로 계획
- 자재선정 시 내구성과 미관을 동시에 고려하여 설계
- 전기 및 정보통신(LAN 등) 분야는 미래 지향적인 기술기준을 적용
- 모든 기준은 최근 개정된 최신법령에 해당하는 기술기준을 필히 적용
- 정보통신망은 네트워크의 물리적 보안성, 생존성, 확장성 등을 고려

○ 에너지 절약형(Energy Saving) 설계

- 내·외벽, 슬래브, 지붕 등 모든 요소에 방풍, 방한, 단열, 결로 등을 차단하기 위하여 에너지절약형 구조로 설계
- 기계설비는 에너지 고효율 자재사용 및 고효율 시스템 설계

- 내방객 및 직원의 쾌적성과 편리성이 확보된 설계

○ 환경 친화적 부지환경 조성

- 합리적인 토지이용으로 쾌적한 내·외부 환경유지
- 지상부 포장 및 조경시설물, 외부구조물, 외부 옹벽, 우·오수계획 기타시설은 합리적이며, 환경친화적으로 설계
- 공사시행시 분진, 소음, 진동, 폐기물의 발생이 최소가 되도록 고려한 소음·진동관리법제23조(생활소음, 진동의 규제)에 맞게 설계

○ 방법, 방재 등에 편리하고 유지관리가 용이한 설계

- 건축물의 완성뿐만 아니라 유지관리에 대한 비용이 최소화되는 방법 등을 고려한 경제적인 설계
-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이므로 화재, 지진, 태풍, 홍수 등 재해에 대하여 안전 하고 원할한 피난에 유리하도록 설계
- 문화 및 집회시설은 「건축법」 제53의2(건축물의 범죄예방)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므로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394호)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를 준용할 것(외부공간 계획시 가시성을 확보할 것)

○ 안전성과 시공성이 확보된 설계

- 고정하중, 적재하중, 적설하중, 풍하중, 지진하중 및 건축물의 실제의 상태에 따라 하중, 수압, 진동, 충격 등에 의한 외력, 온도변화, 수축 및 크리프의 영향을 고려한 구조안정성이 확보된 설계
- 지반조사보고서의 결과에 따라 합리적인 기초계획이 이루어진 설계 및 향후 시설 변화요구에 대비하는 사전대책(설계하중, Expansion Joint등)을 고려하여 설계

2. 분야별 설계 지침

1) 건축

○ 일반사항

-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이 되지 않도록 설계한다.
- 사업수행과정에서 법령등에 의거 당연히 시행하여야 할 업무는 본 과업 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포함된 것으로 본다.
- 기타 세부계획 및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해석에 따라 실시설계를 수행한다.

- 이용 약자를 위하여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시설, 규모 및 구조로 설계한다.

○ 배치계획

- 건축물의 대지조건 및 주변 환경을 충분히 고려하여 대지의 효율도를 높이도록 하며, 건물의 배치, 외부공간 및 동선 체계를 합리적으로 고려한다.
- 대지의 지형에 순응하고 옥내·외를 자연스럽게 연결하여 계획한다.
- 외부보행자 동선은 대지 내 조경시설물과의 연계를 적극 고려한다.
- 동선계획시 계획대지 및 주변 인접대지와의 관계에선 예상되는 변화를 고려하여 계획한다.
- 재난에 대비한 소방용, 비상용, 시설관리용 차량동선을 고려한 배치 계획이 되어야 한다.
- 사업부지 출입구에서부터 보행자 동선과 차량의 동선을 분리하여 보행자 우선의 동선체계를 중심으로 동선의 흐름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 노약자, 어린이, 장애인의 접근을 쉽게 하고 혼잡함을 최소화한다.

○ 평면계획

- 용도와 기능에 적합한 공간계획과 사용자에게 쾌적함을 줄 수 있는 평면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 관람규모, 이용인원, 주 이용대상을 고려하여 공간구성 및 공간면적을 확보해야 한다.
- 대상시설의 수요를 고려하여 공용공간에 편의시설 등을 도입하여 계획 한다.
- 장애인 편의시설은 그 편의성을 최대한 고려하여 설계 한다.
- 안전성을 최대한 고려하여 설계하고, 위험이 예상되는 장치 및 공간에는 충분한 안전설비를 갖추도록 한다.
- 비상시 대피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비상재해 대피시설 기준을 준수하여 설계한다.
- 이용자의 동선과 건축물의 기능성을 고려하여 각실 및 편의공간을 계획한다.
- 기계설비공간은 집중 및 통합하여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효율적인 운영·관리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 공간 계획

- 각 시설별로 조화 있는 수직·수평 동선의 적절한 구성을 한다.
- 장애인 편의를 위한 충분한 고려와 관리운영 효율성을 반영한 동선이 되도록 한다.
- 이용자의 안전을 충분히 반영하고 옥외시설과 연계 동선을 고려한다.
- 이용자의 적절한 휴게장소(옥외테라스 등)를 고려한다.
- 이용자의 동선은 피난시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 입면계획

- (구)제일극장 복합시설 이라는 이미지를 고려한 외장 및 마감재료를 적용하며 진출 입구 인지성을 고려한다.
- 건축물의 형태, 재료, 색채 등 디자인 요소들이 통일성 있고 조화 되도록 계획한다.
- 내구성과 경제성을 갖춘 재료의 사용을 권장한다.

○ 단면계획

- 건축물의 단차를 고려한 합리적인 설계방안(상영관, 볼링장 등)을 계획하여야 한다.
- 실의 용도, 면적, 특성에 따라 적절한 층고를 산정하여 경제적인 단면계획이 되도록 계획한다
- 가급적 건물 내부에 단차가 생기지 않도록 계획하여 하며, 계단 등 단차 해결을 위한 구조물로 이용자의 이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한다
- 냉난방배관, 공기순환기배관, 급배수관, 전선트레이, 소방시설, 통신선 등의 원활한 설치를 위한 천정 내부 공간확보가 가능하도록 고려되어야 한다.

○ 구조계획

- 건물의 골조는 건물의 기능, 규모, 경제성, 안전성, 시공성 등을 검토하여 계획한다.
- 구조의 설계는 경제적이며 합리적인 구조계획과 정밀한 구조 계산에 의하여 구조물의 안전이 우선되어야 하며, 관련법규의 적정치 이상으로 처짐, 진동현상 등이 발생하여서는 안된다.
- 구조설계는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있는 자가 하여야 한다.
- 진동 및 소음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 지하층 바닥 골조 및 벽체 등은 우수의 유입, 결로 및 지하수에 대해 안전

하도록 설계하고, 토질에 접하는 외벽과 지붕스라브는 토압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한다.

- 지하수위로 인한 건물의 부력에 대한 안전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 지진에 대비한 내진설계를 하여야 하며, 법에서 정한 규정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설계기준강도 표현)
- 각 실의 기능을 고려하여 충분한 하중을 견딜 수 있는 구조로 계획한다.
- 토질 조사 후 지반의 상태에 따라 기초양식을 결정한다.(하천 고려)

○ 친환경, 녹색건축물, 에너지절약 계획

- 관련법에 따라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및 에너지 효율 등급인증 등 각 등급에 맞게 설계하여야 한다.
- 녹색건축물 보급 및 활성화를 위한 정부정책에 맞추어 친환경 신재생에너지(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는 예상에너지사용량을 산정하여 설치계획을 감안하여 계획하고, 발주처와 협의하여 반영여부를 결정한다.
- 유지관리 측면을 충분히 고려하여 시설물 완공 후 유지관리비 과부담 등의 이유로 시설물이 유희화 되는 일이 없도록 설계하여, 지속가능한 친환경 녹색건축물에 준하는 설계가 구현되도록 계획한다.
- 신재생에너지는 시공의 효율성, 유지보수의 용이성, 미관 등을 고려하여 발주처와 협의 후 반영해야 한다.

○ 주요자재 사용계획

- 기능에 적합하고 경제적인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 국내자재중 KS품 사용이 원칙이며 KS품이 없을 경우 자재 검토후 발주처와 협의하여 선정한다.
- 부득이 수입자재 등을 사용시에는 사전에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 관급자재 및 주요자재(골재 등)는 현지 생산공급처를 확인 후 우선 반영하여 설계한다.

2) 토목

○ 일반사항

- 설계도서는 본 지침서에 의거 작성하되 사전조사 단계에서 부지현황을 인근의 지형까지 포함하여 세밀히 조사한 후 현황도를 작성하고 계획설계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 부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도로, 하수관로, 맨홀, 건축물, 고압선, 통신선, 기타 지상 및 지하구조물, 지하매설물 같은 사항을 면밀히 사전에 조사 분석하여야 한다.
- 계획평면도는 종합계획 평면도를 작성하고 배수계통도, 포장평면도, 하수 계획평면도는 세분하여 작성한다.

○ 토공 및 흙막이 설계

- 토공은 절성토의 균형을 유지하여 경제적 설계가 되도록 계획하고 부득이 토취장 또는 사토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최소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 설계자는 토공설계시 토취장 또는 사토장을 현지에서 직접 조사하여 중간 및 실시설계시 운반거리에 따른 비용을 내역에 반영하여야 한다.
- 흙막이 설계에 따른 구조계산서의 제반 설계정수는 지질조사 결과 또는 학회발표자료 등 객관적 근거를 기초로 작성하여야 한다.
- 흙막이 시공을 위하여 필요한 계측사항에 대하여는 계측기의 종류 및 설치수량 등을 설계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 비산먼지 방지대책으로 세륜기 설치의 검토를 충분히 하여 경제적인 설계 및 대안을 수립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 토질의 화학적 특성을 감안하여 내부식성 말뚝을 선정하고 부득이 강관말뚝을 선정할 경우에는 방식대책을 강구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 말뚝박기공사에 따른 소음, 진동, 분진 등에 의한 주변지역의 민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최신 공법을 적용한다.

○ 우·오수 및 상수도 설계

- 건축물 내부에서 발생하는 오수와 외부의 우수가 원활히 배제될 수 있도록 하수도 시설기준에 적합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 배수시설 계획은 인접 우·오수관로, 맨홀의 위치 및 관저고, 최종 연결 처리구의 용량 등을 정확히 조사한 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 우수관 및 오수관이 지형구배상 부득이 3.0m/sec이상일 때는 맨홀을 설치하여 낙차를 두어 유속을 상기 범위내로 유도하도록 한다.
- 맨홀의 위치는 기점 및 구배, 방향, 내경의 변화시점에 설치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적당한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우수관 및 오수관은 별도로 분리하여 처리토록 한다.

- 상수도는 기존 인입관로를 조사하여 가장 최단거리로 설계에 반영한다.

○ 도로 및 포장 설계

- 도로계획은 이용자의 편의를 감안, 합리적으로 계획하여야 하며 주변도로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 도로구조시설에 관한 규칙 등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 도로, 주차장 등 포장두께는 이동하중 등을 감안하여 현장 여건에 따라 단면을 결정하되 동결심도를 고려한 두께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포장면은 우수맨홀과 연계하여 설계하여야 하며 포장면은 적절한 구배를 주어 우천 시 우수의 흐름이 원활하여야 한다.

○ 기타

- 부지 경계부근은 도로, 인접토지 및 구조물 등에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옹벽설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경제적이며 합리적인 설계를 하여야하며 구조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일반적인 부지내의 비탈면의 구배는 1:1.5를 기준으로 하고 그 보호방법은 현장 여건에 적합한 방법으로 계획하여야 하나 비탈면의 구배가 높을 경우 (5m이상)에는 반드시 사면안정해석을 실시하여 사면구배를 결정하여야 한다.

3) 조경

- 식재수종은 기능에 따라 선정하고, 보존가치가 있는 식물은 이식 될 수 있도록 설계에 미리 반영한다.
- 조경은 법적인 요건을 검토하여 쾌적한 녹지환경이 되도록 하고 주변의 생태환경을 고려하고, 기존 조경은 훼손을 최소화하며, 환경 친화적인 방법으로 복구방안을 수립한다.
- 오염에 강하고 계절감이 있는 수목구성으로 생동감 있는 분위기를 조성한다.
- 조경은 대지주변 현황분석 및 건축물 특성을 감안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 휴게공간의 시설물은 현대적 감각에 의한 시각적 안정 및 주변환경과 어울리는 환경 친화적인 재료를 선정한다.
- 차량동선 및 보행자 동선, 건물내부 이용공간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휴게공간, 수경공간, 녹지공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4) 기계설비

○ 공통 일반사항

- 설계조건은 건축물 입지조건에 준하고, 기타 발생열량은 건축, 전기, 기타 조건에 적합하게 설계한다.
- 냉난방, 환기, 공기조화, 위생, 소화 및 자동제어설비등 유지관리가 편리하고 에너지 절약형 시스템을 채택하여야 하며, 주요장비는 설계전 반드시 발주처와 협의하여 설계를 진행하여야 한다.

○ 냉난방, 환기 및 공기조화설비

- 주요장비는 경제적이고 효율과 기능이 우수한 것으로 건물과 조화되고 설비가 차지하는 면적이 최소화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 실내의 냉난방 방식은 조절이 용이하고 쾌적한 환경이 되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사무실 등 상시 사용공간이 아닐 경우 별도의 조절기구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 실내의 공조방식은 온·습도 조절이 용이하도록 설계함을 원칙으로 한다.

○ 위생설비

- 급수방식은 현장상황에 따라 발주자와 협의하여 반영한다.
- 저수조는 제반법규에 적합한 위생용수, 소화용수를 확보하여야 한다.
- 급탕조는 별도로 설치함을 원칙으로 화장실, 탕비실 등에 공급한다.
- 동절기에 각종 배관이 동파되지 않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 위생기구는 KS제품 또는 동등 이상 품을 사용한다.

○ 소화설비

- 소방법규 및 소방시설의 설치규정 및 위험물 제조소 등의 설치기준에 부합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 자동제어설비

- 자동제어설비는 각 건물규모에 적합한 것으로 선정하되 기능이 우수하고 온습도 조절 및 주요장비에 대한 제어등 운영관리상 필요한 각종 자료의 지시, 경보, 상태표시, 기록이 가능한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 가스설비

- 건물 내 가스시설은 도시가스 공급업체와 협의하여 시행할 것.

5) 전기설비

○ 공통 일반사항

- 에너지절감 및 제반 재해방지 목적에 만족하여야 한다.

- 토목, 건축, 기계, 통신, 소방등의 공종과 연관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 향후 유지보수 및 관리에 편리를 도모할 수 있어야 한다.
- 전기설비는 미래 지향적인 기술을 적용하여야 한다.
- 최근 개정된 법령중 전기(소방)에 해당하는 기술기준을 적용한다.

○ 수변전 설비

- 부하의 설비용량 산출을 정확히 하여야 하며 적정 수용률, 부동률을 적용한다.
- 수배전실의 규모 및 배치의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
- 한전전원 인입점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고 예비전원설비를 확보한다.
- 한국전력공사와 협의 고품질의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한전인입분담금 및 전기 사용전검사 수수료를 산출한다(순수공사비에서 제외 : 수요기관 부담)

○ 동력공사

- 전동기의 용량에 알맞은 개폐기 및 전선 굵기로 선정하여야 한다.
- 사용전압 및 기동방법을 타당성 있게 선정하여야 한다.
- 역률개선용 콘덴서를 부착토록 설계하여야 한다.
- 전기설비기술 기준령에 적합한 접지방법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 조명설비공사

- 조도기준 설정 및 조도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용도에 적합한 등기구를 선정하고 필요시 실폭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등기구의 배치 및 부착방법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 전열공사

- 콘센트의 설치높이 및 위치를 적정하게 설계하여야 한다.
- 용도에 알맞은 전압을 선정하고, 콘센트를 설치한다.

○ 소방설비공사

- 수신기, 발신기, 중계기, 감지기, 유도등, 전기화재경보기등 소방법에 적합하게 설계를 하여야 한다.
- 각종 소화설비에 따른 감시 및 관리의 편의를 도모하여야 하며 기존시설과 원활히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6) 정보통신설비

○ 공통 일반사항

- 시설 및 주요실별 수요를 감안한 미래지향적이며 충분한 용량을 확보한다.
- 유지관리 방법과 비용을 고려한 경제적인 설계가 되어야 한다.
- 설계시 방재, 보안에 대한 고려를 하여야 한다.

- 정보통신설비 설계는 TTA표준, KICI(한국정보통신연구원) 기준등을 적용한다.

○ 전화설비

- 미래 수요를 감안한 충분한 회선과 용량을 확보하여야 한다.

○ LAN설비

- 정보통신시설은 기술기준에서 첨단시설로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 통합배선 구성방식 및 전화/LAN수구 적정수량을 검토하여야 한다.

- 통합배선설비, LAN, 구내통신선로설비 등을 구성하는 케이블(코드)들은 광신호Tapping 에 의한 정보 유출이 차단되는 해킹방지용으로 설계한다.

○ 약전설비공사

- 방송설비, A/V설비를 검토하여야 한다.

- MATV, CATV설비를 검토하여야 한다.

○ 기타 특수설비(CCTV등)에 따른 적정설비설계가 되도록 한다.

○ 각종 통신설비들은 해킹지점이 감시되도록 하고, 시설변동에 따른 운용·관리 스마트화 방안을 설계한다.

2. 설계도서의 분리작성

○ 건축, 토목, 조경, 기계설비, 전기, 통신, 폐기물처리등 공종별로 분리하여 발주 단위별로 내역을 작성하여야 한다.(도면, 내역서, 일위대가표, 수량산출 등)

3. 설계도서의 표기

○ 설계도서에 사용하는 언어 및 문자는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제5조(사용 언어)에 의한다.

○ 약어(Abbreviation)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설계도면에서 1~2회 나타나는 것은 원어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약어는 대문자를 사용하며 마침표로 끝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도면표기의 기호문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을 준수한다.

- 건축도면 : A

- 건축구조도면 : S

- 토목도면 : C

- 조경도면 : L

- 기계설비도면 : M(소화설비도면 : MF)

- 전기설비도면 : E(전기소방도면 : EF)
- 통신도면 : ET
- 폐기물처리도면 : WT
- 설계도면을 작성함에 있어서 각종 상세도면을 충분히 작성하여 수량산출 및 시공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 각부 치수 및 사용자재의 명확한 표기
 - 각종 부착시설물의 표시
 - 건축, 기계설비, 전기, 통신등 기타 부대설비 관련공사와 관련하여 명확한 구분 표시
 - 특수공법인 경우 시공방식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계도서(상세도, 특기시방서등)를 작성
 - 국내에서 시행된 바 없는 특수공법인 경우에는 공인기관 기술검토서 첨부

4. 도면 작성

- 도면용지는 영구보관에 지장이 없는 최상품을 사용한다.
- 도면규격은 A3규격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도면은 기둥 및 외벽선과 조적선이 식별 가능하도록 상세하게 표기한다.
- 토목, 건축, 기계설비, 전기, 통신도면은 동일한 축척으로 표현하여 공중 간대조(Overlapping에 의한 Cross Check)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 설계도면에는 모든 면에 참여기술자가 서명 날인하여야 하며 종결보고서에는 구체적으로 공종별 참여기술자의 성명, 담당업무, 기술자격, 참여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 구조도면 및 구조계산서에는 구조기술자가 필히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 ※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제43조(설계도서 작성 참여 기술인의 업무 수행내용 명기) : 설계 등 용역업자는 최종용역보고서 및 설계도면에 참여건설기술자의 성명·담당업무·참여기간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당사자로 하여금 이를 확인한 후 날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장 설계도서 작성요령

1. 계획설계(안)

아래의 계획설계 작성방법에 따라 설계공모 당선안을 기본으로 심사위원 보완 의견 및 발주자의 의견을 반영한 내용으로 제출

1) 일반사항

- 설계자가 제출한 보완된 계획안이 부적합하다고 발주자가 검토의견을 통보 시 설계자는 조속한 시일안에 새로운 대안을 재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그로 인한 용역기간의 연장은 인정하지 않는다.
- 발주자가 보완조건으로 계획(안)을 승인하면 설계자는 즉시 보완·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중간설계를 진행한다.

2) 계획설계 수정 제출(공모안에서 보완된 사항 위주)

- 현장조사서
- 설계계획 개요 작성
- 대지분석
 - 도시축, 향, 조망분석
 - 토지이용계획
 - 건축가능 영역
 - 차량 및 보행자 동선
- 주변도로망과 주차 진출입부, 내부 램프 등을 포함한 지상층 계획
- 대지내 동선계획, 주차계획(전체주차대수 산출근거 포함)
- 개략적인 평면 및 입면계획(입면형태는 주변과의 조화성)
- 조경계획
- 관련법규 검토서

3) 현장 조사방법

- 현장조사는 관련문헌 및 서류조사와 현장조사를 병행하여야 한다.
- 서류조사
 - 대지에 관련된 토지대장, 지적도, 도시계획확인원, 등기부등본, 조례 등 특이한 사항을 모두 조사하여야 한다.
 - 기온, 습도, 강우량, 풍속, 강설, 동결심도, 지진 등 설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 현장조사

- 대지의 지상과 지하매설물, 지형의 개황, 기존수목, 대지내 경작물, 대지내 소음·진동, 주변 공사현장(지하수위, 토취장, 사토장, 민원사항등)의 특징등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전체를 확인할 수 있는 대지전경을 촬영 보관하여야 한다.
- 주변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주변 건축물의 외관적 특징을 조사하여야 한다.
- 가스, 상·하수도, 오폐수처리방법, 전기, 통신, 도로, 지역난방등의 도시기반 시설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조사한다.
- 현장의 대지내 주위 경계점, 레벨 등에 대하여 발주처에서 제공한 측량자료를 바탕으로 현장을 검토 하여야 한다.
- ※ 문헌 및 서류조사에 의하여 조사된 결과는 계획설계시 현장조사보고서로 작성·제시하여야 하며, 종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4) 측량관련

○ 일반사항

- 측량자료 확인은 발주처가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검토하거나, 필요시 발주처에서 별도 발주한다.
- 측량자료 확인은 계획 설계, 중간설계, 실시설계 시 설계의 신뢰성을 확보하는데 있다.
- 본 지침서에 명기되지 않았으나 설계자가 설계 목적상 필요한 조사사항은 그 사유를 서면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실시한다.
- 발주기관이 서면지시 또는 승인한 추가조사에 대한 경비는 실비 정산할 수 있다.
- 인·허가 진행에 관한 제반사항은 설계자가 책임지며, 설계자 부담으로 이를 해결하여야 한다.

2. 중간설계

1) 정의

- “중간설계”라 함은 계획설계 내용을 구체화하여 발전된 안을 정하고, 실시설계 단계에서의 변경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검토가 이루어지는 설계 단계로서, 연관분야의 시스템 확정에 따른 각종 자재, 장비의 규모, 용량이 구체화된 설계 도서를 작성하여 발주자로부터 승인을 받은 단계를 말한다.

2) 일반사항

- 계획설계를 기초로 하여 작성하되 설계지침서 및 수정·보완지시서에 따라 작성한다.
- 계획 설계 위치를 기준으로 지질조사 계획서에 근거한 지질조사를 실시한다.
- 실시설계의 기본적인 기준을 제시할 수 있도록 단위 공사별로 작성되어야 한다.
- 주요기능의 특성, 성능, 재질, 형태 등을 기술하여 실시설계에 필요한 설계 기준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전기, 기계설비, 통신 및 주요장비의 용량산출과 주요 구조부의 구조계산 등 구조 계획서를 작성하고 설계기준, 참고자료, 참고도면을 첨부한다.
- Utility(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 저수조등)시설은 장비 Lay-Out을 작성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는다.

3) 지질조사

○ 일반사항

- 지질조사는 발주처가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검토하며, 추가 조사사항 발생 시 발주처와 협의한다.
- 지질조사에 대하여는 조사계획서(조사일시, 방법, 기간, 위치, NX공수)를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에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지질조사는 발주자가 지정하는 위치에서 실시하고, 채취된 시료는 시료 보관상자에 위치별로 구분 표기하여 별도로 납품한다. 또한 기초구조를 설계함에 필요한 시험은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설계에 반영하며, 조사심도는 현장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기초설계 자료를 얻기에 충분한 지층까지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설계자는 현장 지질조사 완료 후 성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설계자료 및 공법을 제시하여야 하고 발주자의 검토를 받은 후 인쇄하여야 한다.
- 지질조사 시 책임기술자를 상주하여 지질조사 시험규정 등 관련법규에 따라 시추조사를 하여야 한다.

○ 조사방법

- 지질조사는 계획 설계(안)에 따라 건물의 위치가 확정된 이후에 건물의 위치를 고려하여 지질조사를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 시추간격 및 심도는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정하되 지질상태의 변화가 심하고 공사기간 중 · 장기적 안정성이 요구되는 주요구조물 설치지역은 감독자

의 승인을 득한 후 시추간격 및 심도를 조정할 수 있다.

- 조사심도는 현장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기초설계 자료를 얻기에 충분한 지층까지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일반적으로 연암 2.0m이상까지 조사하며, 시추지점의 좌표 및 표고를 측정하기 위하여 측량을 실시해야 한다.

- 설계자는 현장 지질조사, 현장시험 및 실내시험 완료 후 성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설계 자료를 제시하여야한다

- 지하수위측정

· 시추공내의 지하수위는 시추완료 후 일정시간 경과한 후 각각 측정하여 조사 지점의 안정된 수위를 측정한다.

· 지하수위의 유동이 심한 지점에 대해서는 조사 전 기간을 통하여 수시로 측정하여 지하수위의 변동 상태를 파악한다.

- 토질시험 및 토질조사 등

· KS F(한국산업규격)의 의한 시험 및 조사

· 기타 본 사업부지(지반)의 특성을 파악할 수 실험(물리시험, 역학시험, 화학시험,안정화시험,실내암석시험등) 등

- 시료상자정리

· 시료상자에는 과업 명, 조사일시, 조사자, 시추공 번호, 상자번호를 표시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지질조사 성과품

- 시료보관상자(75cm×40cm×6cm 이상) 및 시료

- 보고서는 A4 규격으로 좌철(무선무사철), 시추사진 및 전경 등 첨부되는 사진은 칼라를 사용한다.

4) 설계서 구성

○ 건 축

- 설계설명서

· 공사개요 : 위치, 대지면적, 공사기간, 공사금액 등

· 설계개요 : 지역, 지구, 구조, 규모, 건축면적, 연면적, 건폐율, 용적률, 주차면적, 조경면적, 최고높이, 층고, 층별 면적, 각층 주용도 등

· 현지조사 : 국내의 유사한 규모의 사례를 조사한 결과와 분석·검토 내용(반영사항 표기)

· 계획설계 내용

- 사전조사 : 지반고, 지질, 강우량, 동결심도, 바람, 상하수도, 도로상황 등
사전조사 시 조사내용 표기
- 시공방법
- 개략공사비 산정
- ※ 일위대가표는 불필요하나 공종별 개략내역서가 첨부되어야 공사비관리
(Cost Planning)가 가능함
- 주요자재계획 및 기타 필요한 사항
- 구조계획서
 - 설계근거기준
 - 구조재료의 성질 및 특성
 - 제반 하중조건에 대한 분석
 - 각부 구조계획 : 골조의 평면, 간사이(Span), 층고, 바닥판 구조 등
 - 구조성능 : 단열, 내화, 차음, 진동 등
- 시방서 : 실시설계의 기준이 되는 당해공사에 필요한 특기사항
- 도면종류
 - 부근안내도 : 방위, 도로 및 목표가 되는 지물 등
 - 배치도 : 축척, 방위, 대지가 면하는 도로의 위치와 폭, 대지 및 도로 경계선에서 건축물까지의 거리, 담장, 옹벽, 정화조, 배수시설, 건축물의 부속시설의 위치, 기타 시공에 필요한 사항
 - 대지 구적도
 - 건축면적 산출표
 - 내·외부 마감표 : 바닥, 천정, 내벽, 외벽, 측벽, 지붕 등
 - 각층 평면도 : 각실 크기, 용도, 벽 위치, 재료, 두께 등 실시설계 기준이 되는 사항
 - 입면도(정면 및 측면) : 실시설계의 기준이 되는 사항
 - 단면도(중횡 2면 이상) : 건축물의 구조를 파악하기 좋은 위치에서 중횡 2면 이상 절단하여 단면도를 표시
 - 계단 평·단면상세도 : 실시설계의 기준이 되는 사항
 - 각층 창호 평·입면도 : 실시설계의 기준이 되는 사항
 - 주요 구조부 단면상세도
 - 기타 실시설계에 기준이 되는 필요한 도면

○ 토 목

- 설계 보고서
 - 공사개요 : 위치, 대지면적, 공사기간, 공사금액 등
 - 계획 및 방침 : 위치선정, 주요구조물 및 수리계획
 - 사전조사사항 : 지반고, 지질, 강우량, 동결심도, 바람, 상하수 등
 - 시공방법
 - 개략공사비 산정 및 기타 필요한 사항
- 구조 및 수리계산서
 - 구조계산서
 - 수리계산서
- 개략 설계내역서 : 개략 내역서, 개략 수량산출근거 기타 산출근거
- 도면종류
 - 위치도, 종단면도 및 횡단면도, 평면도, 구조물도 및 부대시설도, 유역 산출 면적표(반드시 배수와 연계되어야 함) 기타

○ 조 경

- 설계 보고서
 - 공사개요 : 위치, 대지면적, 공사기간, 조경면적 산출표, 공사금액 등
 - 사전조사사항 : 지반고, 지질, 강우량, 동결심도, 바람, 상하수 등
 - 개략공사비 산정 및 기타 필요한 사항
- 개략 설계내역서 : 개략 내역서, 개략 수량산출근거 기타 산출근거
- 도면종류
 - 위치도
 - 조경계획 평면도 : 축척, 식수 평면계획, 기타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조경시설물 공사계획 : 조형물, 파고라, 벤치, 음수대 등 조경시설물

○ 기계설비

- 설계 설명서
 - 설비 대략공사비, 설계자의 분석검토서, 사전조사사항, 각종 방식에 대한 중간설계 설명서(시스템별 기능, 특징, 소요예산 등 비교·검토 후 결정)
 - 시방서 : 실시설계의 기준이 되는 당해 공사에 필요한 특기사항 (발주자의 지침을 받아 작성)
 - 설계 계산서 : 주요장비의 개략 계산서(유사 건물 비교)
- 도면종류

- 범례 및 도면목록
- 기계기구 및 장비일람표(수량, 용량, 사양서 기타 필요한 사항)
- 배치도 : 상·하수도의 연결관계, 수조, 위험물저장소, 각종탱크, 정화조, 기계실 위치 등
- 계통도 : 공조, 위생, 소화설비, 기타설비의 계통도
- 평면도 : 유지보수 공간을 고려한 기계실 평면도, 특수층의 설비평면도 냉·난방배관, 공조 덕트, 위생배관 기준층 평면도
- 단면도 : 기계실 기준층 및 특수층의 층고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
- 옥외 공동구 : 관로 및 각종설비 평면도
- 기타 실시설계의 기준이 되는 도면

○ 전 기

－ 설계 설명서

- 전기설비개요 : 각 설비(전력, 전기소방)에 대한 설명
- 수변전 설비도와 결선도 등에 대한 채택 설명 : 인입, 변전실의 배치, 결선도 등에 대한 경제성 및 안전성에 대한 검토사항을 포함한다.
- 본 설계에 적용된 특수한 공법, 기준 시설물 등에 대한 설명
- 에너지절감 및 유지관리에 관한 고려사항
- 인입방식 및 인입지점에 대한 설명

－ 계산서

- 각 실별 조도계산서
- 부하산출서, 수배전 설비용량 계산서, 전압강하 계산

－ 사양서

- 자재사양서 : 각종 기자재의 특성, 정격사용방법, 제작기준 등에 대해 설명한다. 단, K.S. 등 제 규격에 맞는 제품은 해당규격의 번호 등으로 표시할 수 있다.

－ 도면종류

- 현장 안내도
- 범례 : 사용될 기호
- 배치도 : 각 건축물 및 시설물의 배치 및 위치 평면도
- 옥외간선도 : 전력, 통신설비, 방재설비 및 필요설비의 옥외 간선평면도, 전력의 수전지점, 수전경로, 통신설비의 연결지점 및 단자 또는 구내설비와의 연결방법 표시

- 수변전 설비도 : 각종 기기의 배치계획도
- 각종 설비의 계통도 : 전력, 방재, 기타 설비의 계통도
- 각종 설비의 배치도 : 전등, 전열, 동력, 방재설비 기타 설비 배치도
- 기타 실시설계의 기준이 되는 도면

○ 정보통신

- 설계 설명서

· 통신설비개요 : 각 설비(통신, 방송, A/V, CCTV, MATV, CATV 기타 설비)에

대한 설명

- 본 설계에 적용된 특수한 공법, 기준 시설물 등에 대한 설명
- 에너지절감 및 유지관리, 정전대비방안 등에 관한 고려사항
- 국선 및 CATV 인입방식과 인입지점에 대한 설명
- 통신케이블(코드)들은 광신호Tapping에 의한 정보 유출 차단방안 설명
- 광케이블의 해킹감시 방안 설명
- 외부 임차 통신망에 대한 해킹지점 감시 대책 설명(필요시 통신사업자와 협의하여 제시)

- 계산서

- 회선 용량계산서, 전계강도 계산서, 교환기 용량계산서
- DVR 용량계산서

- 시방서

- 자재시방서 : 각종 기자재의 특성, 정격사용방법, 제작기준 등에 대해 설명한다. 단, K.S. 등 제 규격에 맞는 제품은 해당규격의 번호 등으로 표시할 수 있다.

- 도면종류

- 현장 안내도(건축개요, 마감표 등)
- 범례 : 사용될 기호
- 배치도 : 각 건축물 및 시설물의 배치 및 위치 평면도
- 옥외간선도 : 통신, 필요설비의 옥외 간선평면도, 국선인입지점 및 경로, 연결지점 및 단자 또는 구내설비와의 연결방법 표시
- 통신장비 설치도 : 각종 기기의 배치계획도
- 각종 설비의 계통도 : 전화, LAN, CATV, CCTV, MATV, 통신 및 기타 통

신

설비의 계통도

- 각종 설비의 배치도 : 교환기, 전관방송, A/V, MATV 등 통신설비 및 기타 필요설비의 배치도
- 기타 중간설계의 기준이 되는 도면

○ 추정예산 공사비 작성

- 건축공사(가설공사, 토지 및 지정공사, 골조공사, 창호 유리공사, 수장공사, 마감공사, 조적공사, 방수공사, 조경공사, 기타 잡공사)
- 기계설비공사 / 전기공사 / 소방공사 / 통신공사 / 토목공사
- ※ 제경비 포함한 총 공사비 내역 작성

3. 실시설계

1) 정의

- “실시설계”라 함은 계획설계 및 기본설계를 바탕으로 하여 입찰, 계약 및 시공에 필요한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단계로서, 공사의 범위, 양, 질, 치수, 위치, 재질, 질감, 색상 등을 구체적으로 결정하여 발주자의 요구조건 반영 여부를 확인하고 최종적으로 납품하는 설계의 최종단계를 말한다.

2) 일반 사항

- 중간설계를 기초로 하여 작성하되 설계지침서 및 수정·보완지시서에 따라 작성한다.
- 축척에 의거 정확히 도시하고 규격, 용량 등을 모두 기록한다.
-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맞게 작성하며 분야별로 수량 및 공사비를 세밀하게 산정하여야 한다.
- 전기, 기계설비, 통신 및 주요장비의 용량산출과 구조물의 구조계산 등 계산서를 작성하고 설계기준 등을 첨부한다.

3) 설계서 구성

○ 건축

- 설계 설명서

- 공사개요 : 위치, 대지면적, 공사기간, 설계금액 등
- 설계개요 : 지역, 지구, 구조, 규모, 건축면적, 연면적, 건폐율, 용적률, 주차면적, 조경면적, 최고높이, 층고, 층별 면적, 각층 주용도 등

- 사전조사사항 : 지반고, 지질, 강우량, 동결심도, 바람, 상하수도, 도로상황 등 사전조사내용을 바탕으로 설계내용에 반영
- 세부 시공방법
- 공사비 산정(공종별 물량 및 공사비) 요약
- 건물의 색채사용계획
- 공정계획(공정표 포함)
- 기타 필요한 사항
- 구조 계획서
 - 설계근거기준
 - 구조재료의 성질 및 특성
 - 제반 하중조건에 대한 분석
 - 각부 구조계획
 - 구조성능 : 단열, 내화, 차음, 진동 등
 - 구조계산서
- 시방서
 - 당해 공사에 필요한 일반 및 특기시방서
 - 특기시방서에는 자재의 물성, 시험방법, 시공순서 등이 모두 기술
- 도면종류
 - 부근안내도 : 방위, 도로 및 목표가 되는 지물 등
 - 투시도 : 천연색채 사용
 - 도면 목록표
 - 배치도 : 축척, 방위, 대지가 면하는 도로의 위치와 폭, 대지 및 도로경계선에서 건축물까지의 거리, 담, 옹벽, 정화조, 배수시설, 건축물의 부수시설의 위치, 레벨표시의 기준이 되는 Bench Mark 기타 시공에 필요한 사항
 - 부분배치도 : 상기배치도를 구체적으로 표시
 - 구적도
 - 건축면적 산출표
 - 내·외부 마감표 : 바닥, 천정, 내벽, 외벽, 지붕 등
 - 각층 평면도, 단위 평면도
 - 각층 천장 평면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지붕 평면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입면도(4면)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주단면도 : 구조를 파악하기 용이한 위치에서 종횡 2면 이상 표기

- 주단면상세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각실 단면상세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계단 평·단면상세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셔터, 피트, 발코니 등 부분상세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창호일람표, 각층 창호평면도, 창호상세도
- 각부 구조배근상세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옹벽배근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각부 구조단면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구조부재 접합상세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각층 기둥·보 위치 및 일람표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부착시설물 상세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조경계획 평면도 : 축척, 식수평면계획, 기타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건물 색채사용계획 도면 기타 필요한 도면
- 기타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입면이 달라지는 부분은 평·입·단면상세도(축척 : 1/50 정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 공사비산출서 : 수량 및 공량 산출근거, 내역서, 일위대가표, 가격조사자료 등

○ 토목

- 설계 보고서

- 공사개요 : 목적, 범위, 내용, 기간, 과업수행지침, 설계금액 등
- 계획 및 방침 : 위치선정, 주요구조물 및 수리계획
- 사전조사사항 : 지반고, 지질, 강우량, 동결심도, 바람, 상하수도 등
- 세부시공계획 / 자재사용계획 /세부공정계획
- 세부공사비 산정 기타 필요한 세부사항

- 구조 및 수리계산서

- 시방서

- 도면 종류

- 위치도
- 종단면도 및 횡단면도
- 평면도
- 구조물도, 부대시설도 기타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공사비산출서 : 수량 및 공량 산출근거, 내역서, 일위대가표, 가격조사자료 등

○ 조경

- 설계 보고서

- 공사개요 : 목적, 범위, 내용, 기간, 과업수행지침, 설계금액 등
- 사전조사사항 : 지반고, 지질, 강우량, 동결심도, 바람, 상하수도 등
- 세부시공계획 / 자재사용계획 /세부공정계획
- 세부공사비 산정 기타 필요한 세부사항

- 시방서

- 도면 종류

- 배치도
- 종단면도 및 횡단면도
- 평면도
- 조경시설물 배치도
- 기타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공사비산출서 : 수량 및 공량 산출근거, 내역서, 일위대가표, 가격조사자료 등

○ 기계설비

- 설계설명서 : 냉난방시스템 기타 설비별 개요와 공사비 및 에너지 절약 측면에서 초기투자비와 유지관리비와의 세부비교 검토내용, 간단한 운전요령서 등
- 시방서 : 당해공사에 필요한 특기사항 및 일반사항을 상세히 작성
- 설계 계산서 : 부하계산서, 장비 용량계산서, 주 덕트 계산서, 환경계산서

(위

생, 오·배수, 가스배관), 공조장비 선정서(습공기선도에 공기상태 표기), 필요시 견적서 등

- 도면종류

- 건축 주요부분 평면도, 단면도
- 범례
- 도면목록표, 계통도
- 기계기구 및 장비일람표(수량, 용량, 시방서 기타 필요한 사항)
- 배치도 : 옥외평면(정화조, 공동구 등 전체배치도),기계실 장비배치도
- 계통도 : 공조, 덕트, 위생, 소화, 자동제어, 연도, 기타 설비 세부계통도
- 평면도 : 각종 설비평면도, 기계실 확대평면도, 정화조평면도.
- 단면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엘리베이터 건축단면도 포함)

- 옥외 공동구 : 관로 및 각종설비 평면도 단면도(확대도면 포함)
- 기타 필요한 도면
- 공사비산출서 : 수량 및 공량 산출근거, 내역서, 일위대가표, 가격조사자료 등

○ 전기

- 설계 설명서

- 전기설비개요 : 각 설비(전력, 통신, 소방, 약전, T.V.공청 기타 설비)에 대

한

설명

- 수변전 설비도와 결선도 등에 대한 채택 설명 : 인입, 변전실의 배치, 결선도 등에 대한 경제성 및 안전성에 대한 검토사항을 포함한다.
- 본 설계에 적용된 특수한 공법, 기준, 시설물 등에 대한 설명
- 에너지절감 및 유지관리에 관한 고려사항, 인입방식 및 인입지점 설명

- 계산서

- 각종 계산에 적용한 계산기준 공식, 적용한 상수 등에 대한 채택 근거서
- 조도계산서, 부하계산서, 수배전 설비용량 계산서
- 전력간선계산서(전압강하 계산서 포함), 발전기 용량계산서,
- 수변전 장비에 따른 변압기 용량계산서, 차단기 용량계산서, 케이블트레이 및 덕트 규격 계산서

- 시방서

- 자재시방서 : 각종 기자재의 특성, 정격사용방법, 제작기준 등에 대해 설명한다. 단, K.S. 등은 해당규격의 번호로 표시가능
- 특기시방서 : 도면에 표시하기 힘든 내용의 각종기기의 설치기준, 설치방법, 주의 사항 등을 명기한다. 단, 필요할 때에는 일반적인 내용과 특별한 내용을 분리하여 작성할 수 있다.

- 도면종류

- 도면목록표, 현장 안내도
- 범례 특기사항 : 사용될 기호 및 시공상 유의할 특기사항
- 배치도 : 각 건축물 및 시설물의 배치 및 위치 평면도
- 옥외에 설치되는 시설물의 위치평면도 및 전기기기 정격상세도 등
- 옥외간선도 : 전력통신설비, 방재설비 및 필요설비의 옥외간선 평면도, 제반간선의 정격설치방법, 설치상세도 등
- 수변전 설비도 : 수변전설비의 평면도(결선 포함), 단면도, 구조물도, 입면

도

및 발전기, 기타 상세도

- 각종 설비의 계통도, 배치도, 결선도 등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평면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단면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기타 필요한 도면
- 공사비 산출서 : 수량 및 공량 산출근거, 내역서, 일위대가표(분전반 포함),

가격조사자료 등

○ 정보통신

- 설계 설명서

· 통신설비개요 : 각 설비(통신, 방송, A/V, CCTV, MATV, CATV 기타 설비)에

대한 설명

- 본 설계에 적용된 특수한 공법, 기준 시설물 등에 대한 설명
- 에너지절감 및 유지관리, 정전대비방안 등에 관한 고려사항
- 국선 및 CATV 인입방식과 인입지점에 대한 설명

- 계산서

- 회선용량계산서, 전계강도계산서, 교환기용량계산서
- DVR 용량계산서

- 시방서

- 자재시방서 : 각종 기자재의 특성, 정격사용방법, 제작기준 등에 대해 설명한다. 단, K.S. 등 제규격에 맞는 제품은 해당규격의 번호 등으로 표시할

수

있다.

- 도면종류

- 현장 안내도(건축개요, 마감표 등)
- 범례 : 사용될 기호
- 배치도 : 각 건축물 및 시설물의 배치 및 위치 평면도
- 옥외간선도 : 통신설비 및 필요설비의 옥외 간선평면도, 국선인입지점 및 경로, 통신설비 연결지점 및 단자 또는 구내설비와의 연결방법 표시
- 통신장비 설치도 : 각종 기기의 배치계획도

· 각종 설비의 계통도 : 전화, LAN, CATV, CCTV, MATV, 통신 및 기타설비의

계통도

· 각종 설비의 배치도 : 통신실, EPS(TPS)실, 교환기, 전관방송, A/V, MATV

등 통신설비 및 기타 필요 설비의 배치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각종 설비의 계통도, 각종 설비의 배치도, 각종 설비의 결선도, 각종 기기의 상세도, 평면도, 단면도, 기타 실시설계의 기준이 되는 도면

- 공사비 산출서 : 수량 및 공량 산출근거, 내역서, 일위대가표, 가격조사자료 등

제6장 용역 성과품의 제출

1. 계획설계 성과품 납품(협의조정 가능)

| 구분 | 설계도서명 | 규격 | 수량 | 단위 | 비고 |
|----|------------|----|----|----|--------------------------|
| 1 | 계획 설계(안) | A3 | 3 | 부 | 필요시 Sketch 포함 (반책 제본) |
| 2 | 현장조사보고서 | A4 | 3 | 부 | |
| 3 | 관련법규 검토서 | A4 | 3 | 부 | 사업승인, 인허가에 필요한 내용 등 |
| 4 | 공사비 계산서 | A4 | 3 | 부 | |
| 5 | 각종 보고 준비자료 | A4 | 3 | 식 | |

위 제출목록 전부를 CD또는 USB로 제작하여 2부 제출

※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별표2] '중급' 도서내용 포함

2. 중간설계 성과품 납품

| 구분 | 설 계 도 서 | 규격 | 수량 | 단위 | 공 종 | | | | | | | 비 고 |
|----|---------|----|----|----|-----|----|----|----|----|----|----|---------------------|
| | | | | | 건축 | 토목 | 조경 | 기계 | 전기 | 통신 | 소방 | |
| 1 | 중간설계보고서 | A4 | 5 | 부 | ○ | ○ | ○ | ○ | ○ | ○ | ○ | |
| 2 | 설계 도면 | A3 | 5 | 부 | ○ | ○ | ○ | ○ | ○ | ○ | ○ | 공종 분리 (반책 제본) |
| 3 | 내역서 | A4 | 5 | 부 | ○ | ○ | ○ | ○ | ○ | ○ | ○ | 공정별 공사비 |
| 4 | 계산서 | A4 | 5 | 부 | ○ | ○ | ○ | ○ | ○ | ○ | ○ | |
| 5 | 시방서 | A4 | 5 | 부 | ○ | ○ | ○ | ○ | ○ | ○ | ○ | 특기시방 포함 ※ |
| 6 | 지질조사보고서 | A4 | 5 | 부 | | ○ | | | | | | |

건축도면 및 공종 포함 전체 본을 제본한다. (건축구조는 건축에 포함 제본)

※ 토목,조경,기계,전기,통신,소방도면은 해당 파트만 제본한다.

※ 위 제출목록 전부를 CD 또는 USB로 제작 하여 2부 제출

※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별표2] '중급' 도서내용 포함

3. 실시설계 성과품 납품 및 제반사항

| 구분 | 설계도서명 | 규격 | 수량 | 단위 | 공 종 | | | | | | | 비 고 |
|----|--------------------|----|----|-----|-----|----|----|----|----|----|----|-------------------------------|
| | | | | | 건축 | 토목 | 조경 | 기계 | 전기 | 통신 | 소방 | |
| 1 | 종결보고서 | A4 | 3 | 부 | ○ | ○ | ○ | ○ | ○ | ○ | ○ | 1부로 작성 |
| 2 | 설계도면 | A3 | 3 | 부 | ○ | ○ | ○ | ○ | ○ | ○ | ○ | |
| 3 | 계산서 | A4 | 3 | 부 | ○ | ○ | ○ | ○ | ○ | ○ | ○ | |
| 4 | 내역서 | A4 | 3 | 부 | ○ | ○ | ○ | ○ | ○ | ○ | ○ | |
| 5 | 관급내역서 | A4 | 3 | 부 | ○ | ○ | ○ | ○ | ○ | ○ | ○ | |
| 6 | 수량산출서 | A4 | 3 | 부 | ○ | ○ | ○ | ○ | ○ | ○ | ○ | |
| 7 | 단가조사표 | A4 | 3 | 부 | ○ | ○ | ○ | ○ | ○ | ○ | ○ | 견적서 포함 가격정보 2개 |
| 8 | 일위대가표 | A4 | 3 | 부 | ○ | ○ | ○ | ○ | ○ | ○ | ○ | |
| 9 | 일반시방서 | A4 | 3 | 부 | ○ | ○ | ○ | ○ | ○ | ○ | ○ | |
| 10 | 특기시방서 | A4 | 3 | 부 | ○ | ○ | ○ | ○ | ○ | ○ | ○ | |
| 11 | 관급시방서 | A4 | 3 | 부 | ○ | ○ | ○ | ○ | ○ | ○ | ○ | |
| 12 | 조감도 | | 1 | 부 | ○ | | | | | | | 표구 포함 (0.6m*0.9m이상) |
| 13 | 공정표 | A3 | 3 | 부 | ○ | ○ | ○ | ○ | ○ | ○ | ○ | 건축설계도면 겉지안에 합권 (전공종 포함) |
| 14 | CD-ROM (usb메모리) | | 3 | SET | ○ | ○ | ○ | ○ | ○ | ○ | ○ | 공종별 통합 |
| 15 | 기타 발주기관 요구사항 | | | | | | | | | | | |

- ※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별표2] ‘중급’ 도서내용 포함
- ※ 조감도는 제출시 별도로 원본File을 CD로 제출
- ※ 폐기물처리는 관련규정에 의거 분리발주시 별도 제작 제출
- ※ 위 제출목록 전부를 CD 및 USB메모리에 저장 제출

1) 종결보고서

- 종결보고서에는 공사개요, 설계설명서, 자재선정보고서, 유사시설답사(해당시), 유지관리계획, 공정보고 공사예정 공정표 등 일체를 기재하여 A4 규격의 책자로 양면인쇄하고 왼쪽에 철하여야 한다.
- 공사별 현장설명서(A4) : 발주자 요구부수

- 참여기술자 현황 2부(공종, 기술자격, 참여기간 등)
- 공정표는 공정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기간을 산정하고 PERT/CPM에 의한 Network 공정표를 공사량에 맞게 정확하게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공사기간은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교통부 훈령 제1140호)”을 준용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 조감도(A1 이상, 표구 포함) 1부
-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성과품

2) 설계설명서

- 환경 및 대지조건, 지질 지형 및 하부구조, 배치계획, 예상 공사비 타당성 검토, 법규 검토, 주요 사용재료 결정, 평면, 입면, 주요 단면 선정, 구조, 설비, 부대시설 등 기본 방식 결정, 설비 계통도 등 설계의 내용을 쉽게 파악 가능토록 작성

3) 계산서

- 구조 계산서, 전력 부하 계산서, 조도 계산서, 냉난방 계산서, 기계 설비용량 계산서, 에너지 절약 계획서, 정화조 등
- 구조계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은 “건축물 구조계산서 작성 및 검토요령”에 의거 작성하여야 한다
- 구조계산서 주요 설계계수가 가정값인 경우 반드시 가정값임을 표시한다.

4) 납품 실시설계 도면 작성에 관한 사항

- 설계도면은 도면 틀레의 훼손을 방지할 수 있고, 보관이 용이하도록 제출
- 관급자 관급자재는 발주가 가능하도록 관련 시방서 및 도면(pdf변환 파일 포함)을 별도로 CD에 저장 제출한다.
- 도면의 내용에 있어 다음 사항을 상세히 명기하여 시공 및 적산에 용이하도록 작성
 - 각부 치수의 정확한 표기(치수는 미터법 사용)
 - 각종 사용자재의 설치 상세도 작성 후 관련 평면도에 명기
 - 각종 자재의 품질, 규격, 형태의 표시
 - 각종 설비 및 구조연결 부위의 위치, 접합방법, 이음길이 등을 명기
 - 각종 부착물 및 부품에 대한 명기
 - 특수공법에 대한 공인기관의 기술검토보고서 첨부 설명서(상세도) 작성

- 도면 이해를 위한 주기 사항 및 시공시 유의사항을 명시
- 부호, 방향KEY PLAN, GRAPHIC SCALE, ROOM NAME 등
- 계획고, 깊이, 구배, 연장 등 표시
- 계통설명도
- 수량집계표
- 기타 관계규정에 따라 요구되는 사항을 명기
- 도면 표기 방법 : 건축, 토목, 기계, 전기 등 관련 법규 및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 표기
- 설계도면에는 도면 하단에 전문 분야별로 참여한 책임 또는 참여기술자의 확인 및 서명 날인을 하여야 함.

5) 시방서 작성에 관한 사항

- 시방서는 설계 도면에 표기하기 어려운 시공방법, 품질기준 등을 명기
- 시방서는 일반 시방서, 특기 시방서, 자재 시방서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합권하여 작성
- 시방서는 건설부 제정 표준시방서 및 관련기준에 적합토록 작성
- 일반시방서에는 설계개요, 인허가사항, 일반 시공방법에 대하여 기술
- 특기시방서에는 일반시방서에 포함되지 않은 다음 사항을 포함 작성
 - 레미콘 구입시 규정상 슬럼프 허용오차를 고려하여 현장타설시 소정의 슬럼프치가 확보될 수 있도록 특별시방서에 명기할 것
 - 각종 자재 및 부품의 시공방법(가공, 조립 및 설치)에 관한 사항
 - 각종 구조공법과 이에 따른 부수시설 및 장비 사용에 관한 사항
 - 관련 공사간의 시공 책임한계 명시
 - 가 시설물의 설치에 관한 사항(가건물, 비계, 흙막이, 형틀 등)
 - 기타 도면에 명기할 수 없는 사항의 설명
- 자재시방서에는 사용 재료의 품질, 규격등과 관리(검사, 시험, 운반, 보관 등)에 관한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 작성하여야 함
- 특수공법 및 특수자재로써 국내 관련 규정이 없을 때에는 그 품질, 규격 및 시공 방법에 대하여 외국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나 관련 사항을 충분히 검토 작성하여야 함
- 사용 자재에 있어서는 제조 회사의 고유 제품명을 표시할 수 없으며, 학술적 명칭을 사용하여야 함
- 도면 및 시방서에 콘크리트의 품질(강도, 슬럼프치, 설계방법, 시공순서, 콘

크리트 타설 순서, 균열 방지대책, 양생 방법 등)에 대해 명기할 것

6) 예산 내역서

- 예산내역서의 작성은 정부 제정 관련 공사 표준품셈을 적용하여야 함
- 공사비 내역서는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을 적용한다
- 재료비
 -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조달정보지 게재가격)으로 한다.
 - 조달 정보지에 미수록된 자재는 기획재정부에 등록된 전문기관에서 조사, 공표한 2이상의 물가지 가격 중에서 최저가격을 적용한다.
 - 상기에서 조사, 공표한 가격이 없는 경우 2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물품의 거래가격을 현장조사 실시, 정확하게 확인하여 적용한다
- 직접노무비 : 조달청, 대한건설협회 및 중소기업중앙회 등에서 공표한 시중 노임을 적용한다
- 공사비에는 지장물 이설비, 한전인입비, 상수도인입비, 도시가스인입비, 시운전비(전기, 기계)등이 포함되어 내역서에 표기하여야 한다.
- 내역서 비고란에 일위대가표의 해당 코드번호를 필히 기록하고 일위대가 없는 자재의 경우 단가 산출조서 근거를 기록할 것
- 표준품셈에 명시되지 아니한 특수 사항에 대하여는 외국의 관련자료를 인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국내의 기술 수준과 여건이 감안되어야 함
- 주요자재 수량은 별도 집계로서 작성하여야 함
- 복합단가의 산출은 일위대가표를 작성하여 국내 관련 기준 및 외국의 사례를 참조 작성하여야 한다.
- 정부기관 준용품셈, 기타 적산 참고자료 적용시는 반드시 근거를 제시 하여야 한다.
- 운반비는 운반 장비, 운반 거리, 도로 상태 등 운반비 산정에 따른 세부 산출 내역을 첨부
- 수량의 산출은 건설부 발행 적산 요령을 기준 산출하되 내역과 근거를 알아보기 쉽도록 품목별 부위별로 작성 집계한다.
 - 작성방법 관련 규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및 법률시행령, 법률시행규칙, 예산회계법 및 동법시행령, 재무회계 예규, 기타 관련 법규 및 기준

7) 예정공정표 작성

- 예정공정표는 반드시 CPM/NETWORK 기법으로 작성한다.
- 공사기간은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 (국토교통부 훈령 제1140호)”을 준용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8) 관련법규 및 제반 규정 준수

- 건축법 및 건축사법, 경관법
- 노인복지법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도시계획법
- 건축물의 구조 기준 등에 관한 규칙
- 극한 강도 설계법에 의한 철근 콘크리트 구조 기준
- 각종재해대책법, 지진재해대책법
- 건설기술진흥법, 동시행령 및 동시행규칙
- 산업안전보건법, 동시행령 및 동시행규칙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 소방법 관련 규정 및 기준
- 산업표준화법 관련 규정 및 기준
- 전기사업법, 동시행령 및 동시행규칙
- 전기공사사업법, 동시행령 및 동시행규칙
- 한전 공급 규정
-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동시행령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및 도시가스업법 관련법규 및 기준
- 폐기물관리법 관련 규정 및 기준
- 각종 환경관련 법령(대기환경보존법 및 수질환경보존법 등)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 전기통신법, 동시행령 및 동시행규칙
- 전기통신공사사업법, 동시행령 및 동시행규칙
- 전파관리법, 동시행령 및 동시행규칙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및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추진에 관한 규정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 수도법 및 하수도법, 동시행령 및 동시행규칙
- 도로법,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주차장법 관련규정 및 기준

- 국토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 국토부 건축설비공사 표준시방서
- 국토부 토목관련공사 표준시방서 및 설계시공 지침
- 국토부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 국토부 건축표준상세도
- 기타 정부 관련 법규 및 지방자치단체 조례방침 등

9) 기타사항

- 상기사항과 공모 지침서상 내용을 과업전반에 적용하며, 내용이 상이한 것이 있는 경우 발주부서의 해석에 따른다.

- [붙임 1] 보안각서
- [붙임 2] 책임기술자 선임계
- [붙임 3] 하도급승인 요청서
- [붙임 4] (계획, 중간, 실시)설계 검사원
- [붙임 5] 주간공정보고
- [붙임 6] 월간공정보고
- [붙임 7] 특정자재 사용리스트
- [붙임 8] Space Program
- [붙임 9] 사업부지 현황 끝.

[붙임 1] 보안각서

보안각서

1. 용역명 : _____ 설계용역
2. 계약 일자 : 202 . . .
3. 착수 일자 : 202 . . .
4. 완수예정일 : 202 . . .

본인은 상기의 용역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하며 그 증거로서 이 각서를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수행의 모든 사항이 국가의 보안상 중요 시설임을 인식하고 과업 수행 중 과업수행과 관련한 모든 사항이 기밀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용역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또는 기밀사항을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5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 의무)에 의거 용역수행기간의 전후를 막론하고 일체 외부에 누설하지 않는다.
3. 본인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내지 제3항에 해당하는 입찰관련서류의 열람 또는 교부를 위하여 발주기관이 전자조달시스템에 설계용역계약의 계약목적물인 설계서를 게재할 수 있다는 데에 동의한다.
4. 본인은 본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지득한 사항을 누설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주기관에 유무형의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건축사법 제20조(업무상의 성실의무 등) 제2항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보안관계법에 의거 처벌되어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5. 본인은 본 용역수행 종료 이후라도 공사 진행과정에서 의견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력한다.
6. 본인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제출한 모든 설계도서, 서류 및 자료에 대한 저작권, 소유권 등 일체의 권리는 기술용역(설계)계약특수조건 제12조(저작권 및 소유권)에 의거 발주자에게 귀속됨을 알고 별도로 발주자의 승인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부에 누설하지 않는다.

202 년 월 일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기술 분야 : 참여공종 표기
성 명 : (인)

임실군수 귀하

[붙임 2] 책임기술자 선임계

책 임 기 술 자 선 임 계

1. 용역명 : _____ 설계용역
2. 계약 금액 :
3. 계약 일자 : 202 . . .
4. 착수 일자 : 202 . . .
5. 완수예정일 : 202 . . .

- 아 래 -

- 가. 성 명 :
- 나. 주 소 :
- 다. 주민등록번호 :
- 라. 기술자격(면허)종별 :

상기 인을 본 설계용역의 책임기술자로 선임하여 제출하오며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수행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계약자를 대리하여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붙임 : 유자격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격(면허)증 또는 경력증명서 사본 1부

202 년. . .

계 약 자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임실군수 귀하

하도급승인 요청서

1. 용역명 : _____ 설계용역
2. 계약금액 : ○○○원
3. 계약일자 : 202 . . .
4. 착수일자 : 202 . . .
5. 완수예정일 : 202 . . .

- 아 래 -

가. 하도급분야 : (구조계산, 건축기계설비, 측량, 지질조사 기타등)

나. 하도급금액 :

다. 하도급자

- 주소 :
- 상호 :
- 대표자 :
- 보유면허 :

- 붙임 : 1. 유자격을 입증하는 서류(엔지니어링활동주체신고증등) 사본 1부
2. 하도급계약서 사본 1부
3. 참여기술자 명단(기술자격 및 경력증명서 포함) 1부

상기 자에게 ○○○분야 설계용역을 하도급하고자 하오며 기술용역(설계)계약 특수조건 제5조에 의거 제출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 년 . . .

계 약 자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임실군수 귀하

※ 하도급 신청 자기검토서

| 하도급 신청 자기검토서 | | | |
|---------------------|--|------------|--------|
| 용역명 | | | |
| 하도급 분야 | | | |
| 하도급 계약일 | | 승인요청 (통보)일 | |
| 착수일자 | | 완수일자 | |
| 수급인 | | 하수급인 | 연락처 포함 |

※ 제출서류 목록 및 검토내용

| 제출서류 | 관계규정 | 하도급 신청내용 | 검토결과 | 비고 |
|--------------------|---|----------|------|----|
| 계약서 | 표준하도급계약서 | | | |
| 사업자등록증 | | | | |
| 하도급 수행에 필요한 자격요건 | 기술사법 제3조(기술사무의 직무) 기술사법 시행령 제2조(기술사의 직무범위)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조 엔지니어링진흥법 시행령 제3조(엔지니어링 기술)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2조 | | | |
| 책임기술자 기술자격 및 경력증명서 | 건설기술관리법 제6조의 2 (건설기술자의 신고) | | | |
| 참여기술자 기술자격 및 경력증명서 | 건설기술진흥법 제21조 (건설기술자의 신고)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2조 별표1 | | | |
| 하도급 금액 및 비율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 2 등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7조의 2 | | | |
| 하도급 사유 | 건축법 제67조(관계전문기술자) 기술용역(설계)계약특수 조건 제5조 | | | |

[붙임 4] (계획, 중간, 실시)설계 검사원

(계획, 중간, 실시)설계 검사원

1. 용역명 : _____ 설계용역
2. 계약금액 : ○○○원
3. 계약일자 : 202
4. 착수일자 : 202
5. 완수예정일 : 202

붙임 : 납품설계도서 목록 1부

(계획, 중간, 실시)설계가 완성되어 검사원을 제출하오니 검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 년. . . .

계약자
주소 :
상호 :
대표자 :

[붙임 5] 주간공정보고

주간공정보고

- 용역명 :
- 용역개요
 - 용역기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계약금액 : 원
- 용역진행사항

| 구분 | 전주진행사항(20 . . .) | 금주예정사항(20 . . .) | 비고 | | | | | | | | | | | | |
|------|---|------------------|----|----|--|--|--|---|----|----|----|--|--|--|--|
| 업무내용 | - 인원투입현황 - 외주작업진행현황 등 - 주요협의사항이나 회의 등이 있을 경우 반드시 표기 - 건축, 토목, 조정, 기계, 전기, 통신 등 분야별로 구분되도록 작성 | | | | | | | | | | | | | | |
| 특기사항 | 문제점 및 해결책 등 표기 | | | | | | | | | | | | | | |
| 공정률 |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25%;">계획</td> <td style="width: 25%;">실적</td> <td style="width: 25%;">대비</td> </tr> <tr> <td style="height: 20px;"></td> <td></td> <td></td> </tr> </table> | 계획 | 실적 | 대비 | | | |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25%;">계획</td> <td style="width: 25%;">실적</td> <td style="width: 25%;">대비</td> </tr> <tr> <td style="height: 20px;"></td> <td></td> <td></td> </tr> </table> | 계획 | 실적 | 대비 | | | | |
| 계획 | 실적 | 대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획 | 실적 | 대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책임기술자 : (인)

임실군청 귀하

[붙임 6] 월간공정보고

월간공정보고

- 용역명 :
- 용역개요
 - 현장위치 :
 - 용역기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계약금액 : ○○○원
- 용역진행사항

| 구분 | 월간 업무수행 내용 (20 . . ~ 20 . .) | 비고 |
|------|-------------------------------|-----------|
| 첫째주 | | (실시/예정공정) |
| 둘째주 | | |
| 셋째주 | | |
| 네째주 | | |
| 다섯째주 | | |
| 익월 | - 공정 지연시 : 지연의 구체적 원인 표기 |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책임기술자 : (인)

임실군수 귀하

[붙임 8] Space Progra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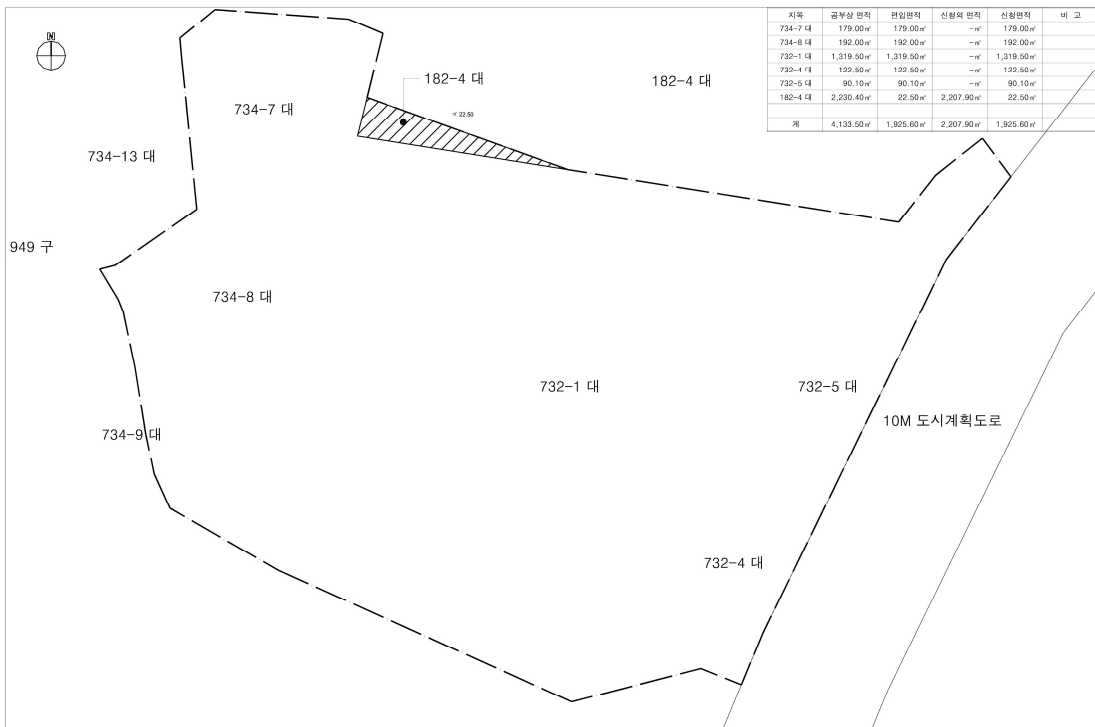
※ 아래의 SPACE PROGRAM은 계획안으로 설계진행 시 수요기관과 협의 확정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 구 분 | 세부시설 | | 산출근거 | 면적(m ²) | 비율(%) | 비 고 |
|------------------|------|---------|--------|---------------------|---------|-----|
| 지하 1층 (공용 공간) | 1종근생 | 목욕장 | | 478.42 | 16.146% | |
| | 공용 | 기계실 | | 100.80 | 9.244% | |
| | | 전기실 | | 75.80 | | |
| | | 계단실, 복도 | | 97.32 | | |
| | 소 계 | | | 752.34 | | |
| 1층 | 1종근생 | 책마루 | | 136.80 | 4.617% | |
| | | 치즈카페 | | 132.03 | 4.456% | |
| | 2종근생 | 잡센터 | | 76.32 | 2.576% | |
| | 공용 | 공용공간 | | 137.24 | 4.631% | |
| | 소 계 | | | 482.39 | | |
| 2층 | 1종근생 | 프로샷 | | 40.92 | 5.312% | |
| | | 스넥바 | | 28.70 | 0.969% | |
| | 2종근생 | 게임장 | | 28.70 | 0.969% | |
| | 운동시설 | 볼링장 | | 778.07 | 26.258% | |
| | 공용 | 공용공간 | | 66.12 | 2.231% | |
| 소 계 | | | 942.51 | | | |
| 3층 | 1종근생 | 푸드코트 | | 98.32 | 3.318% | |
| | 문.집 | 영화관 | | 651.60 | 21.990% | |
| | 공용 | 공용공간 | | 36.00 | 1.215% | |
| | 소 계 | | | 785.92 | | |
| 주차공간 | | | | | | |
| 합 계 | | | | 2,963.16 | 100% | |

| 기존 건물 - (구)제일극장 | | | | | |
|-----------------|----|--|--|--------|--|
| 지상1층 | 창고 | | | 582.00 | |
| 지상2층 | 창고 | | | 211.2 | |
| | | | | | |
| 지상1층 | 차고 | | | 39.90 | |
| | | | | | |
| 합 계 | | | | 833.10 | |

[붙임 9] 사업부지현황

※ 아래의 위치도 및 종합기본구상안은 사업부지의 현황으로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임.



개요 및 토지현황조사 SCALE A1 : 1/100 A3 : 1/200